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0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김성원·김태호·김선교

임이자 · 김소희 · 박충권

박 정・김종양・김용태

조승환 · 김주영 · 한기호

배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이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등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2011년 시행된 서해 5도 특별전형은 다른 특별전형과는 다르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2010년 11월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서해 5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이 이루어 졌음.

그런데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역시 70년 이상 국가안보

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오고 있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타 지역과의 교육수준도 점점 벌어지며 교육불모지로 불릴만큼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어 언제나 소외되어 왔음.

이에 대학입시제도 중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각종 중첩규제는 물론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알 수 없는 공 포와 불안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이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교육·문화"를 "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 문예회관"을 "문예회관"으로, "교육·문화"를 "문화"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교육·문화"를 각각 "문화"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교육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접경지역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u>교육·문화</u> ·관광시설에	제24조(<u>문화</u> ・관광시설에 대한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	지원) ①
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각급 <u>학</u>	문예회관-
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	
숙박ㆍ위락ㆍ여객시설 및 체육	
시설(이하 " <u>교육·문화</u> ·관광	
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	
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②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	문화
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u>교육·문화</u> ·관광시설	문화
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4조의2(교육에 대한 지원)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u>
	지역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
	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

-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접경지역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